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31호
- 나. 제출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2. 제안이유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새마을장학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지급·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학금의 종류 중 성적우수장학금 추가(안 제2조)
- 나. 장학금의 지급대상 구체화(안 제3조제1항)
- 다. 차액 지급 단서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 라.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절차 정비
 - 1) 구지회장의 장학생 최종 추천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신설)
 - 2) 장학생 선정 주체를 구지회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및 중복 지급 확인 의무 신설(안 제5조)
 - 3) 장학생 선정 인원 구체화(안 제6조)

마.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4.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새마을장학금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지급·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본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 수혜자의 다양화를 위해, 성적이 우수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를 격려하는 성적우수장학금을 신설하고
 - 안 제3조에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을 명시하고 기존 유공·특기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및 성적 우수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신설함. 아울러 타 장학금이 본 새마을 장학금 금액에 미달할 시, 그 차액을 새마을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함.
 - 안 제4조에서는 구지회장의 새마을장학생 최종 추천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 선정 주체를 구지회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선정된 장학생의 타 장학금 기수혜 여부를 해당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청장의 장학금 중복지급 확인 의무를 신설함.
 -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선정 인원을 지도자 수의 '7% 이내'로 명시하고
 -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새로 신설한 성적우수 장학생의 자격 요건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별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서울시 타 자치구 조례 현황 1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766호, 2019. 12. 10., 일부개정]

-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 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시행 2023. 11. 7.] [행정안전부훈령 제312호, 2023. 11. 7., 일부개정]

-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그룹	편성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비고
300	301 일반보전금	<p>04. 장학금 및 학자금</p> <hr/> <p>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p> <p>가. 통·리장 자녀, <u>새마을지도자 자녀</u>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법령상 기준액이 없는 경우, 과거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p>	

연번	자치구	지도자 기준	장학금 종류	장학생 정원	장학금 지급범위/금액	장학금 차액지급 규정	비고
1	종로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우등,특기	지도자수 7%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200만원	학비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지도자1명 1자녀
2	중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모범, 특기 (모범품행단정학업우수)	지도자수 7%	·중학생:30만원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100만원	타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급	지도자1명 1자녀
3	용산구	-	유공, 특기	지도자수 7%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100만원	타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급	지도자1명 1자녀
4	성동구	-	유공	지도자수 7%	수업료로 한정	-	지도자1명 1자녀 (부부1자녀)
5	광진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우등,특기 (우등:재적학년50%)	지도자수 7%	-	-	지도자1명 1자녀
6	동대문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우등, 특기 (우등:재적학년50%)	지도자수 7%	공납금 전액 또는 예산범위 내 일부	-	지도자1명 1자녀
7	중랑구	1년이상 (유공 제외)	-	지도자수 7%	시 교육청 고시에 따른 수업료	-	지도자1명 1자녀
8	성북구	1년이상	유공, 우등, 특기 (우등:재적학년50%)	지도자수 7%	·중학생:30만원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80만원	-	지도자1명 1자녀 (5년내 지급자의 자녀 제외)
9	강북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우등, 특기 (우등:재적학년20%)	-	공납금 전액 또는 일부 ※단, 고등학생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에 한정	-	지도자1명 1자녀 (강북구 장학금 지급자 제외)
10	도봉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우등, 특기, 유공	지도자수 7%	-	타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급	지도자1명 1자녀
11	노원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우등, 특기 (우등:재적학년50%)	지도자수 7%	대학등록금	타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급	지도자1명 1자녀
12	은평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우등, 특기 (우등:재적학년50%)	지도자수 7%	·중학생:15만원 ·고등학생:25만원 ·대학생:50만원	타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급	지도자1명 1자녀 (부부1자녀/ 전년수혜자 제외)
13	서대문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특기	-	·고등학교:50만원 ·대학생:100만원	타장학금 수령자 제외 단, 수령액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가능	지도자1명 1자녀
14	마포구	1년이상	유공,우등,특기 (우등:재적학년또는 반정원의 50%)	지도자수 7%	학기별 최대 90만원	타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급	지도자1명 1자녀

연번	자치구	지도자 기준	장학금 종류	장학생 정원	장학금 지급범위/금액	장학금 차액지급 규정	비고
15	양천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모범, 특기 (모범품행단정학업우수)	-	·고등학교:50만원 ·대학생:100만원	타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급	지도자1명 1자녀 (부부1자녀)
16	강서구	-	유공	지도자수 7%	-	타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급	지도자1명당 1회(한학기분)한정 1자녀
17	구로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특기	지도자수 7%	-	타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급	지도자1명 1자녀
18	금천구	-	유공, 특기	-	수업료	-	지도자1명 2자녀
19	영등포구	-	유공, 모범, 특기 (모범품행단정학업우수)	-	(매학기별) ·고등학교:50만원 ·대학교:100만원	타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급	지도자1명 학기당1자녀
20	동작구	2년이상 (특별공적전직 지도자포함가능)	유공, 특기	지도자수 7%	-	타장학금이 새마을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지급	지도자1명 1자녀
21	관악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특기	지도자수 7%	·고등학교:50만원 ·대학교:100만원	-	1가정 2자녀 (고 및 대 각 1회)
22	서초구	1년이상 (유공 제외)	-	지도자수 7%	·고등학생:학비전액 ·대학생:매년고등 학생학비전액의 150%이내 ※단 학비 정액은 서울 특별시 국립 또는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합한 금액	타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자 제외	지도자1명 1자녀
23	강남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우등, 특기 (우등:재적학년50%)	지도자수 7%	(학기별) ·고등학생:45만원 ·대학생:90만원	타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전액에서 지급 받은 장학금 공제후 차액지급	지도자1명 1자녀
24	송파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우등, 특기 (우등:품행단정학업우수)	지도자수 7%	·고등학생:100만원 ·대학생:200만원	타 장학금지급액이 새마을장학금에 미달 하는 경우 지급가능(차액)	지도자1명 2자녀 (각 재량 재학 기간 중 1회 부부 1자녀) /직전년도 수혜 대상자 제외
25	강동구	1년이상 (유공 제외)	유공, 우등, 특기 (우등:품행단정학업우수)	-	-	타 장학금지급액이 새마을장학금에 미달 하는 경우 지급가능(차액)	지도자1명 1자녀